

제318회 임시회
2013.03.15(금)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03.15(금)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일자 : 2013년 02월 25일

다. 회부일자 : 2013년 02월 26일

라. 상정일자 : 2013년 03월 06일

(제3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교육국장 이명숙)

가. 제안이유

-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 상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 위원의 임기를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함(안 제5조)
- 2) 학교운영위원 또는 학부모의 정화위원회 참관 불허 및 위원의 기피 의결 기준 추가(안 제10조제3항)
- 3) 학교운영위원 또는 학부모의 정화위원회 참관 신청방법 추가(안 제10조제4항)
- 4) 학교의 장 의견과 다르게 정화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되었을 경우 재심의 기준 추가(안 제10조제5항)
- 5) 정화위원회 심의결과 통보방법 추가(안 제10조제6항)
- 6) 그 밖에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한 관련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라기복)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 8. 13. 「학교보건법 시행령」(이하 “법령”이라 한다) 개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동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 법령 변경에 따른 조례 정비 내용은
 - 안 제5조에 정화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 안 제10조제3항에 정화위원회 회의 참관 불허와 위원의 기피 의결 기준을, 안 제10조제4항에는 참관 신청 방법을 추가하였으며,
- 안 제10조제5항에는 학교의 장 의견과 다르게 정화위원회에서 심의 되었을 경우 재심의 기준을, 안 제10조제6항에서는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그 밖에 법령에서 직접 규정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 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첨부서류 :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교보건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학교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7조의4까지”로 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로 한다.

제2조 중 “같은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① 정화위원회는”을 “정화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조 제2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학교보건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정화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한 사항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화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사항

제3조제5호 중 “기타 위원회”를 “그 밖에 정화위원회”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의 임명 등) 정화위원회 위원은 교육장이 영 제7조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무원 위원의 임기) 소속 직원 및 관련기관의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위원의 자격상실)”을 “(위원의 해임·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위원이”를 “영 제7조의4와 별도로 위원이”로 하며,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를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제6조 위원의”를 “위원이 제6조의”로 하고, “상실하거나 제7조 위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를 “상실한 경우”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와 제4호를 삭제한다.

2. 위원이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7조의4제2의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해당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새로운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정화위원회 위원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정화위원회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교육장은 제3조제1호에 따라 해제심의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안전과 관련된 정화구역 관리자인 학교의 장의 정화위원회 출석 여부 (학교의 장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학교의 장 의견서)
2. 민원인의 신청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사항
3. 신청지 주변에 대한 심의사례 등

③ 영 제7조에 따른 참관의 불허와 영 제7조의3에 따른 위원의 기피 여부 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영 제7조에 따라 정화위원회의 참관을 하려면 학교의 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화위원회 참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참관 신청인 보안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⑤ 영 제7조에 따른 재심의를 학교의 장 의견과 다르게 정화위원회에서 해제 결정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 때 학교의 장은 정화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장 의견과 다르게 정화위원회에서 해제 결정되었을 경우 학교의 장에게 통보

2. 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교육장에게 통보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화위원회 참관 신청서(제10조 관련)

1. 참관하고자 하는 안전명

업종	업소명	업소예정지 (소재지)	층별	학교와의 거리(m)			비고
				학교명	출입문	경계	

2. 참관자 명부

구분	성명	성별	직업	참관 불허사유 해당여부		비고
				유	무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						

0000년 00월 00일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7조제8항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참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서약서 부.

0000 학교장 (직인)

충청북도○○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장 귀하

비고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심의 안전과 관련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정화위원회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정화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관 불허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 참관요청은 학교장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참관불허 사유에 대한 사전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참관 불허사유
 - 참관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참관자가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안전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참관자나 참관자가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참관인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금지행위와 시설에 해당하는 영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 정화위원회 회의 중 별도의 의사발언으로 회의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참관 신청인 보안 서약서(제10조 관련)

소 속 : ○○○○학교

직 위 :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성 명 : ○ ○ ○

위 본인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7조제8항에 따라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 회의 참관을 신청하며 아래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회의에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및 발언을 하지 않는다.
2. 회의에서 습득한 정보 및 기타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한다.
3.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
4. 정화위원의 의결을 거쳐 참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참관할 수 없다고 통보 받았을 때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학교운영위원 성 명 (서명)

학부모 성 명 (서명)

충청북도○○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는 「학교보건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학교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7조의4까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 -----.</p>
<p>제2조(설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2조(설치) -----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 ----- ----- -----.</p>
<p>제3조(기능) ① 정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학교설립예정지 선정 시 주변지역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항 3. (생 략) 4.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 	<p>제3조(기능) 정화위원회는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학교보건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정화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현 행	개 정 안
<p><u>육환경보호에 관하여 교육장이 의뢰하는 사항</u></p> <p>5. <u>기타 위원회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u></p>	<p><u>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화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사항</u></p> <p>5. <u>그 밖에 정화위원회 -----</u></p>
<p>제4조(구성) ① <u>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3명 이상 17명 이하로 구성한다.</u></p> <p>② <u>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③ <u>정화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장의 소속직원, 관련기관의 공무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으로 한다.</u></p>	<p>제4조(위원의 임명 등) <u>정화위원회 위원은 교육장이 영 제7조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u></p>
<p>제5조(임기) ①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p> <p>② <u>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3개월 이내이고 위원정수의 최소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정화위원회의 결정으로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제5조(공무원 위원의 임기) <u>소속 직원 및 관련기관의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8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u>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제6조 위원</u>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u>제7조</u> <u>위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u> 2. <u>소속직원과</u> <u>관련기관 공무원</u>을 <u>그 직위로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u>에 <u>인사발령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한 때</u> 3. <u>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u>이 <u>학교운영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u> 4. <u>회의소집 통지</u>를 받고도 <u>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u> <p>② <u>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u>이 <u>학교운영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할 경우 보궐 위원</u>이 <u>위촉될 때까지 정화위원회 위원</u>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p>	<p>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① <u>영 제7조의4와 별도로</u> <u>위원이 -----</u> <u>-----</u> <u>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위원이 제6조의 -----</u> <u>상실한 경우</u> 2. <u>위원이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u> <p><삭 제></p> <p><삭 제></p> <p>② <u>영 제7조의4제2의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해당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새로운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정화위원회 위원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u></p>
<p>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u>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정화위원회를 대표한다.</u></p>	<p>제9조(위원장의 직무대행) <u>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u></p>

현 행	개 정 안
<p>② <u>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u>행한다.</u></p>
<p>제10조(회의 등) ① <u>정화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교육장이 민원인으로부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와 시설해제 신청이 있어 심의(이하 "해제심의"라 한다)를 의뢰하는 경우</u> 2. <u>교육장이 학교설립예정지 선정과 관련한 주변지역의 학습환경과 학교의 보건위생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심의를 의뢰하는 경우</u> 3. <u>교육장이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심의를 의뢰하는 경우</u> 4. <u>교육장이 학교교과교습 학원과 교습소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심의를 의뢰하는 경우</u> 	<p>제10조(회의 등) ① <u>정화위원회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u></p>
<p>② <u>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② <u>교육장은 제3조제1호에 따라 해제심의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p>③ 교육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해제심의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정화구역 관리자인 학교장의 의견서 2. 민원인의 신청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사항 3. 신청지 주변에 대한 심의사례 등 <p>④ 위원장은 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교육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통보한 정화위원회의 심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과 관련된 정화구역 관리자인 학교의 장의 정화위원회 출석 여부(학교의 장이 출석하지 아닌 경우 학교의 장 의견서) 2. 민원인의 신청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사항 3. 신청지 주변에 대한 심의사례 등 <p>③ 영 제7조에 따른 참관의 불허와 영 제7조의3에 따른 위원의 기피 여부 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영 제7조에 따라 정화위원회의 참관을 하려면 학교의 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화위원회 참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참관 신청인 보안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p>⑤ 영 제7조에 따른 재심의를 학교의 장 의견과 다르게 정화위원회에</p>

현행	개정안
<p>결과가 공정성·객관성 등이 뚜렷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p> <p><신설></p>	<p>서 해제 결정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 때 학교의 장은 정화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p> <p>⑥ 위원장은 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의 장 의견과 다르게 정화위원회에서 해제 결정되었을 경우 학교의 장에게 통보 2. 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교육장에게 통보

관계 법령

□ 학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2.11.14] [대통령령 제24026호, 2012. 8.13. 일부개정]

제7조(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사람의 소속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정화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은 정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은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소속 직원, 관련기관의 공무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⑥ 정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의 장을 정화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2.8.13>

⑧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정화위원회의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정화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관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8.13>

⑨ 학교의 장은 정화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를 요청받은 정화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8.13>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2.8.13>

[제목개정 2012.8.13]

제7조의2(위원의 임기)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8.13],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12.8.13>],

[시행일 : 2012.11.14] 제7조의2

제7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정화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화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화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정화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4]

[제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3은 제7조의4로 이동 <2012.8.13>]

제7조의4(위원의 해임·해촉)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2.8.1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1의2. 정화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의2. 위원 중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해당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2.7.4], [제7조의3에서 이동 <2012.8.13>]